



2022 학교폭력사안처리 「학교자체해결제」 절차 안내

우)15010 경기도 시흥시 해송십리로 472-30, TEL: 031-8063-2902

제 2022-112호
발송: 2022. 5. 27.
담당: 진로인성부

학부모님, 안녕하십니까? 가정에 늘 사랑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.
드릴 말씀은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(약칭: 학교폭력예방법, 2021.3.23.시행)」에 따라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학교자체해결제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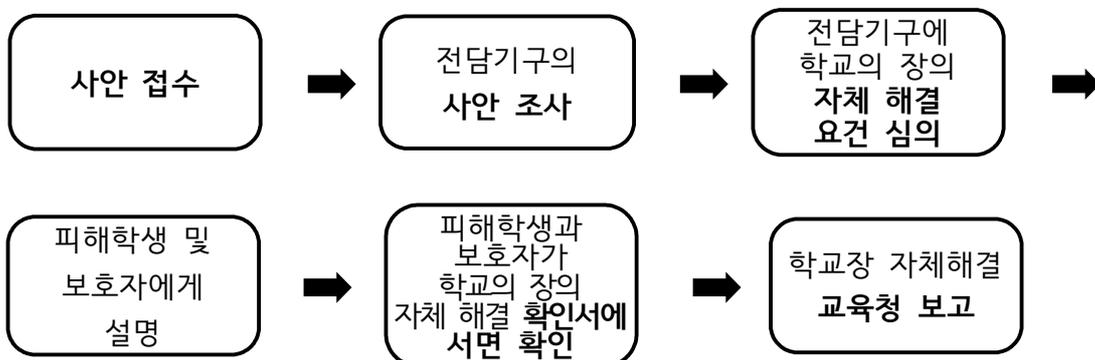
I 추진 배경

- 학교폭력 사안별 상황을 고려하여, 학교의 교육적 해결기능을 회복하고 학생 간 관계회복에 집중하기 위한 제도 필요
- 지역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이관
- 학교별 학교폭력전담기구를 통한 학교자체해결제 실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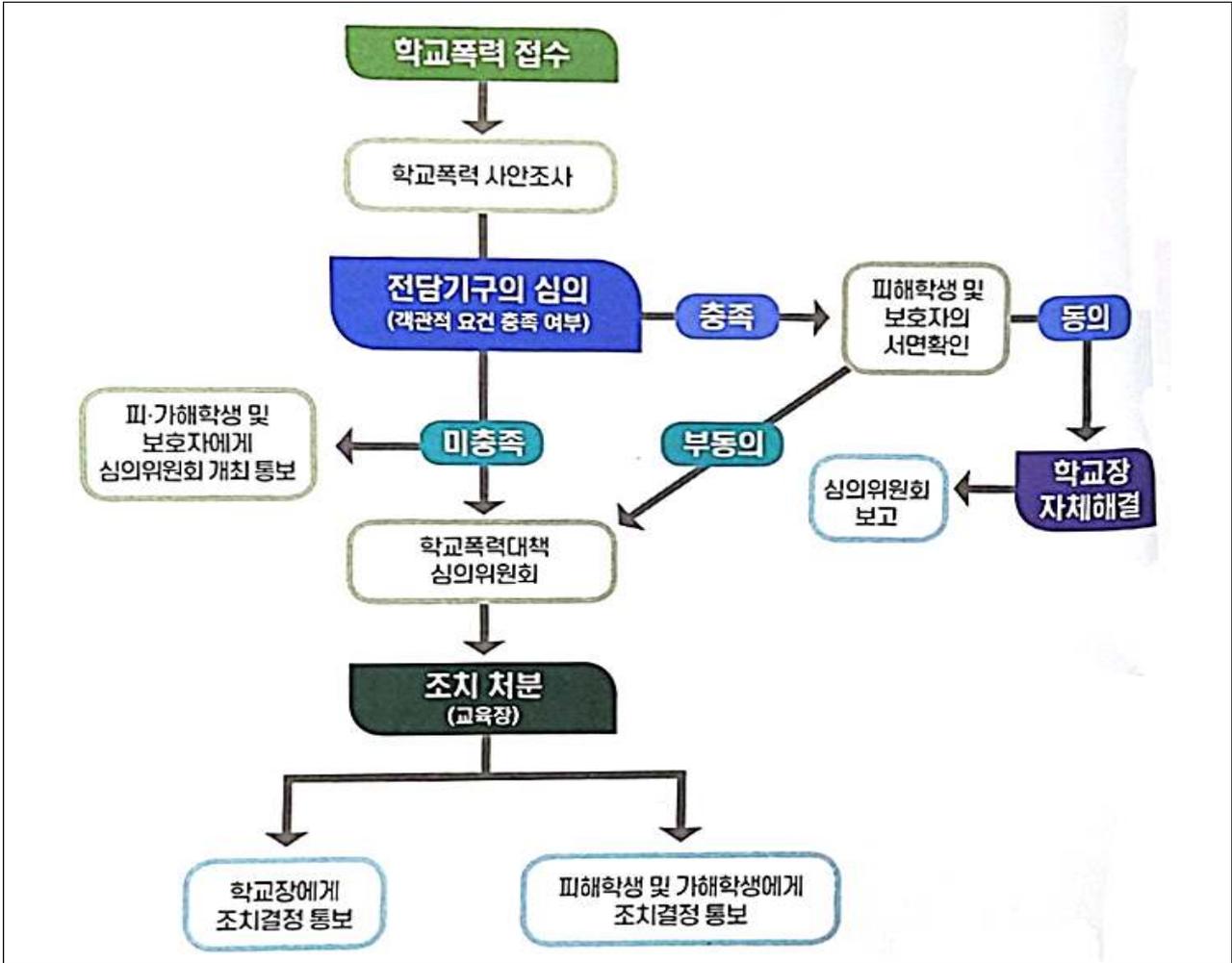
II 관련 근거

- **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(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)**
 -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
 4.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
 5.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
- **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(학교의 장의 자체해결)**
 - ① 제1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.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3. 23.>
 1. 2주 이상의 신체적·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¹⁾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
 2.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²⁾된 경우
 3.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
 4.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, 진술,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

III 학교자체해결 절차 및 흐름도



N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처리 흐름도



※ 원칙적으로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사안의 학교장 자체해결 이후에는 동일 사안에 대하여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없다.

V 후속 조치

○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3(학교의 장의 자체해결)

학교의 장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에 학교폭력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,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학생·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.

- ※ 필요시, 관련 학생 간 관계개선 의지와 동의 여부에 따라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.
- ※ 관계회복이란 두 명 이상의 관련 대상자들이 발생 상황에 대하여 이해, 소통, 대화 등을 통해 원래 상태 또는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.

2022년 5월 27일
배곧누리초등학교장

1) 진단서 : 전담기구 심의일 이전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가능
2) 재산상 피해의 복구 : 복구 여부는 전담기구 심의일 이전에 재산상 피해가 복구되거나 가해 관련 학생 보호자가 피해 관련 학생 보호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복구해줄 것을 확인해 주고 피해 관련 학생 보호자가 인정한 경우